

수원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651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6510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가단50361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유병일, 양선화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덕

담당변호사 김재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상우

변론종결 2022. 7. 15.

판결선고 2022. 11. 25.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가단50361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사이에 2019. 10. 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148,733,32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8,733,3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를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준현, 판사 안희경, 판사 석윤민